

#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(2024.12.30)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**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**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▶ 상 품 명 :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
- ▶ 상품특징 :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

## 2 거래 조건

 이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			
가입대상	퇴직연금사업자 (자산관리기관)					
대상예금	정기예금					
가입좌수	제한없음					
가입금액	최소 1원 이상, 최고 가입금액 제한 없음					
가입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3개월, 6개월, 12개월, 18개월, 24개월, 36개월</li> <li>■ 디폴트옵션형<sup>주)</sup> 의 계약기간은 3년</li> </ul> <p>주) 퇴직연금(DC/IRP)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(디폴트옵션)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</p>					
기본이율 (연%, 세전)	■ 기본이율 (2024.07.01 기준)					
	구 분	3개월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
	확정급여형(DB형)	2.95	3.05	3.15	2.70	2.40
	확정기여형(DC형)	2.95	3.05	3.15	2.70	2.40
	디폴트옵션형(재예치형/만기상환형)					2.30
※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						
우대이율	해당사항 없음					
최고이율	계약기간별 기본이율과 동일					
이자계산방법 (연%, 세전)	원금 X 연이율 X 예치일수/365 (단리식)					

구 분	내 용										
자동재예치	<p>1. <b>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</b></p> <p>(1) 신규일 또는 만기일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재예치되며,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</p> <p>(2)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등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하며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 로 합니다.</p> <p>2. <b>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(기업형) 퇴직연금(IRP)</b></p> <p>(1)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 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.)</p> <p>(2)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포트 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 일하게 재예치됩니다.</p> <p>(3)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하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</p>										
분할해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,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합니다.</li> <li>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분할해지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</li> </ol>										
중도해지이율 (연%, 세전)	<p>■ <b>중도해지이율</b></p> <p>-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/계약일수 (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.01%)</p> <p>※ 적용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입기간</th> <th>적용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개월 미만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11개월 이상</td> <td>9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입기간	적용율	6개월 미만	50%	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70%	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80%	11개월 이상	90%
가입기간	적용율										
6개월 미만	50%										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70%										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80%										
11개월 이상	90%										
특별중도해지	<p>다음의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특별중도해지사유 (9), (10),(11) 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 <p>■ <b>특별중도해지 사유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</li> <li>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수탁자의 사임</li> <li>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/ol>										

	(7)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(8)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(9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(10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(11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인 경우												
<b>■ 경과기간별 약정이율</b>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<th>적용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개월 미만</td><td>3개월제 이율</td></tr> <tr> <td>6개월 이상 ~ 1년 미만</td><td>6개월제 이율</td></tr> <tr> <td>1년 이상 ~ 2년 미만</td><td>1년제 이율</td></tr> <tr> <td>2년 이상 ~ 3년 미만</td><td>2년제 이율</td></tr> <tr> <td><b>3년</b></td><td><b>3년제 이율</b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경과기간	적용율	6개월 미만	3개월제 이율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6개월제 이율	1년 이상 ~ 2년 미만	1년제 이율	2년 이상 ~ 3년 미만	2년제 이율	<b>3년</b>	<b>3년제 이율</b>
경과기간	적용율												
6개월 미만	3개월제 이율												
6개월 이상 ~ 1년 미만	6개월제 이율												
1년 이상 ~ 2년 미만	1년제 이율												
2년 이상 ~ 3년 미만	2년제 이율												
<b>3년</b>	<b>3년제 이율</b>												
만기후이율	없음 (해당 상품은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)												
양도 및 질권설정	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 (단,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보제공 가능)												
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	이 예금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												
계약의 해지	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		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■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와 관련한 추가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					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<p>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정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p>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							
예금자보호여부	확정급여형(DB) 에 운용되는 정기예금	비해당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								
	확정기여형(DC)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(IRP)에 운용되는 정기예금	해당 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

-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이 상품은 경남은행 고객기획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**고객센터(1600-8585, 1588-8585)**,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금융소비자보호부(080-590-8282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[www.knbank.co.kr](http://www.knbank.co.kr)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, e-금융민원센터([www.fcsc.kr](http://www.fcsc.kr)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